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00009호

시행일자 2022. 4. 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일부개정  
안내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-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26156(2021.10.4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-08039호(2021.10.5.)
-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7760(2022.3.31.)

3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(2판) 중 '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' 관리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개정사항 >

- (배경) 필요 시 원본 또는 기 구축된 예방접종시스템을 통한 **백신출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**, 보관소 보관의무 폐지
- (내용)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'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' 관리방안 개선
  - 의료기관의 '출하증명서 사본 보건소에 제출 의무' 삭제(보건소 사본 보관의무 폐지)

※ 붙임 : 1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.

2.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일부개정 신규대조표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